

## 기금운용심의회운영규정

2018.08.31. 제정      2019.10.01 일부개정      2020.11.01. 일부개정      2021.06.01. 일부개정  
 2021.07.01. 일부개정      2022.03.01. 일부개정      2022.10.01. 일부개정      **2023.09.01. 일부개정**

**<재정혁신팀>**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사립학교법」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3 및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6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“기금”이라 함은 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」 [별표1]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(항) 원금보존기금 및 (항) 임의기금적립에 포함하는 자산을 말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금 투자 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1.7.1., 2022.3.1.)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**부총장**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**재정혁신팀장**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(개정 2019.10.1., 2021.6.1., 2021.7.1., 2022.10.1., **2023.9.1.**)

③ 위원회는 교원 2명이상, 직원 2명이상, 재학생 2명이상, 회계 관련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 (개정 2021.7.1., 2022.3.1.)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임기)**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심의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심의회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 (신설 2020.11.1.)

④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(신설 2020.11.1.)

**제7조(준수사항 및 면책)** ①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며, 업무상 알게 된 투자 정보 및 기타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이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**제8조(독립성)** 위원회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

**제9조(관계 부서의 협조)**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부서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기타)**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